



제427회국회(임시회)
제3차 환경노동위원회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단기육아휴직 도입 〉

■ 김형동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936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전문위원 한석현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3
1. 단기육아휴직 도입	3

I. 제안경위

2024년 11월 27일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근로자의 출산·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, 가족돌봄휴가·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학교·유치원 방학, 감염병에 따른 등원·등교 중지,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,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~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.

이에,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,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,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, 제19조의4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3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단기육아휴직 도입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개정안은 ①자녀의 휴원·휴교, 방학, 질병 등의 경우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(제19조제6항),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하되,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(안 제19조제7항), ③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는 변경사유, 변경한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(전자적 방식 포함)으로 알려야 하고(안 제19조제8항), ④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미포함하는 한편(안 제19조의4제1항), ⑤사업주가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동일업무·동일수준임금 지급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처벌(500만원 이하의 벌금)하는 내용임(안 제37조제4항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육아휴직) ① ~ ⑤ (생략)	제19조(육아휴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

<신 설>

<신 설>

⑥ (생 략)

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
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근로자
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
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
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

자녀의 휴원·휴교, 방학, 질병 등
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
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
단기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육아휴직 기
간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
로 하며,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
기간에 포함한다.

⑦ 사업주는 제6항에 따른 육아휴
직을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
어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신청한
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정
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
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
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
다.

⑧ 사업주는 제7항에 따라 시기를
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, 변
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
에게 서면(문자메시지, 메신저 등
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)으로 알
려야 한다.

⑨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
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-----

-----.

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<u>사용한 횟수</u>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② (생 략) 제37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. (생 략) 4. <u>제19조제1항·제4항</u>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,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.·6. (생 략)	----- <u>사용한 횟수</u>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37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19조제1항·제4항·제6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.·6. (현행과 같음)
--	--

나. 검토의견

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¹⁾

그런데 현재 자녀의 학교·유치원 방학, 감염병에 따른 등원·등교 중지,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1~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현행법은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진 않으나,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「고용보험법」²⁾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~2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개정안은 1~2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37호)의 의결을 전제로, 근로자들이 자녀가 속한 기관의 휴원·휴교, 방학 또는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

1) 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.

1.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
3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

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2) 제70조(육아휴직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(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)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.

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.

개정안에 따르면,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해 1년에 최대 4주의 단기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바,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단기간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해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.

한편,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19조(육아휴직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9조(육아휴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·휴교, 방학,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단기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</u>	제19조(육아휴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, 휴교, 방학,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단기로 신</u>

	여야 한다.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 1회 1주 단위로 최 대 2주로 하며, 제2 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.	청하는 경우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 1회 최장 2주로 하며, 1주 단위로 사 용할 수 있음. 다만, 해당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에 포함한다.
--	---	--

문 의 처

02)6788-5539